

의안번호	제 814 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8월 25일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박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4
----------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발 의 자 : 박성원,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의원

1. 제안 이유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능 (안 제3조)

다. 구성 (안 제4조)

라. 위원장의 직무 (안 제5조)

마. 위원의 임기 (안 제6조)

바. 회의 (안 제7조)

사. 의견청취 등 (안 제8조)

아. 수당 및 여비 (안 제9조)

자. 운영세칙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라. 입법예고: 2021.8.19.(목) ~ 2021.8.24.(화)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물”이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충청북도 내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건축물을 말하며, 부속건물(창고, 사택, 숙직실, 조립식건물 등)은 제외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교육시설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C등급 (보통) 판정을 받은 교육시설물로 보수·보강 및 노후 건물 개선(리모델링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이 건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되는 경우
3. 교육시설물로 종합계획상 제반조건(건물배치·부지활용도·기타)등이 열악하여 교육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면적 50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교육부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에서 개축으로 결정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학교혁신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대학의 건축 구조 분야로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 연구단체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3.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연구 또는 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심의사항)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위험시설의 안전등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의 계속사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 조치(해소)이후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위험시설심의회 미운영 기관 등급 판정 요청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9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 개정안은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